

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

신청인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대표자 성명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
부과기간	납부고지코드번호	부과금액	분할납부금액	분할납부기한 간격

분할납부사항		
분할 횟수	납부기한	분할납부금액
1 차	. . .	
2 차	. . .	
3 차	. . .	
4 차	. . .	
5 차	. . .	
6 차	. . .	
합 계		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[]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[]불허용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지방(유역)환경청장

직인

안 내 말 씀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
 -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